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백종헌 · 윤재옥 · 임종득
서천호 · 김상훈 · 김석기
이소희 · 권영세 · 박형수
권영진 · 김대식 · 김기웅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,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,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.

이러한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는 압류, 제2차 납부의무, 고액·상습채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어, 수범자의 법령 이해도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“의료보호”를 “의료지원”으로 정비함(안 제5조제1항제2호, 제8조제1항제3호·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6호).
- 나. 법률 내에서 이미 약칭이 정의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“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”를 “요양급여”로, “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”을 “요양기관”으로 정비함(안 제41조의3제1항, 제41조의5 및 제109조제5항제2호).
- 다. 「약사법」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“약제의 제조업자”를 “의약품의 제조업자”로 정비함(안 제41조의3제2항 및 제101조의2제1항).
- 라. 「국세징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“체납처분”을 “강제징수”로, “체납처분비”를 “강제징수비”로 정비함(안 제77조의2, 제81조, 제81조의3, 제81조의4, 제82조, 제83조, 제84조, 제86조 및 제99조).
- 마.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및 고액·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 중 “보험료, 연체금”의 표기를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의 표기 방식에 맞추어 “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”으로 정비하여 연체금이 보험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(안 제77조의2제1항·제2항 및 제83조제1항).
- 바.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임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제102조의 조 제목을 “정보의 유지 등”에서 “비밀준수 의무 등”으로 정비함(안 제102조).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의료보호를”을 “의료지원을”로, “의료보호대상자”를 “의료지원대상자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“의료보호대상자”를 각각 “의료지원대상자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“의료보호대상자”를 각각 “의료지원대상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6호 중 “의료보호대상자”를 “의료지원대상자”로 한다.

제41조의3제1항 중 “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”을 “요양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약제”를 각각 “의약품”으로 한다.

제41조의5 중 “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”를 “요양급여”로 한다.

제77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연체금 및 체납처분비”를 각각 “그에 따른 연체금 및 강제징수비”로 한다.

제8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체납처분”을 각각 “강제징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“체납처분을”을 각각 “강제징수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체납처분”을 “강제징수”로 한다.

제8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체납처분비”를 각각 “강제징수비”로 한다.

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체납처분비”를 각각 “강제징수비”로 한다.

제82조제2항 중 “체납처분을”을 “강제징수를”로 한다.

제8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“보험료, 연체금과 체납처분비”를 각각 “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강제징수비”로 한다.

제84조제1항제1호 중 “체납처분이”를 “강제징수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체납처분을”을 “강제징수를”로 한다.

제86조제1항 중 “체납처분비”를 각각 “강제징수비”로 한다.

제99조제5항 본문·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“체납처분”을 각각 “강제징수”로 한다.

제101조의2의 제목 중 “약제”를 “의약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약제”를 각각 “의약품”으로 한다.

제102조의 제목 “(정보의 유지 등)”을 “(비밀준수 의무 등)”으로 한다.

제109조제5항제2호 중 “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”를 “요양급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적용 대상 등)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	제5조(적용 대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<u>의료보호</u> 를 받는 사람(이하 “유공자등 <u>의료보호대상자</u> ”라 한다)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료지원</u> ----- ----- <u>의료지원</u> <u>대상자</u> -----. ----- -----.
가. 유공자등 <u>의료보호대상자</u>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	가. ----- <u>의료지원대상자</u> -----
나.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<u>의료보호대상자</u> 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	나. ----- ----- <u>의료</u> <u>지원대상자</u> ----- ----- -----

사람 ②·③ (생 략) 제8조(자격의 취득 시기 등)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. 1.·2. (생 략) 3. 유공자등 <u>의료보호대상자</u>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.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<u>의료보호대상자</u>는 그 신청한 날 ② (생 략) 제10조(자격의 상실 시기 등)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. 1. ~ 5. (생 략) 6.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<u>의료보호대상자</u>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	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8조(자격의 취득 시기 등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<u>의료지원대상자</u>----- ----- 4. ----- ----- -----<u>의료지원대상자</u>--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자격의 상실 시기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<u>의료지원대상자</u>-----
--	---

② (생략)

②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제의
제조업자·수입업자 등 보건복
지부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
“약제의 제조업자등”이라 한다)
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
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
제(이하 이 조에서 “약제”라 한
다)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
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

② (현행과 같음)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. It contains ten identical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, stacked vertically from top to bottom. Each set consists of a solid top line, a middle dashed line, and a solid bottom line,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. The paper is otherwise blank, with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.

② -----의약품

-----의약품-----

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② 사업이 양도·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, 연체금 및 채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.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1조(보험료등의 독촉 및 채납처분) ①·② (생략)

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채납

-----.

② -----

-----그에
따른 연체금 및 강제징수비---

-----.

제81조(보험료등의 독촉 및 강제징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강제징수-----
-----.

④ -----강제

처분을 하기 전에 보혐료등의 체납 내역,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, 압류 예정 사실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제
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
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
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
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
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
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
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한국
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
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
산관리공사(이하 “한국자산관
리공사”라 한다)에 공매를 대
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
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.

⑥ (생략)

정수를

강제 정수

⑤

강제 징수

⑥ (현행과 같음)

제81조의3(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)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(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부당이득금”이라 한다)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·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(이하 이 조에서 “체납등 자료”라 한다)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,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

[illegible]

지 아니다.

1.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

2.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

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81조의4(보험료의 납부증명)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(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의무자”라 한다)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공사·제조·구매·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채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

1. -----

-----강제
징수비-----

2. -----

강제 징수비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생략)

[illegible]

여야 한다. 다만, 납부의무자가
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
채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
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.

제82조(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)

① (생략)

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
[illegible]

②

강제징수비

제82조(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강제징수를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채납처분이</u> 끝나고 채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	1. <u>강제징수가</u>----- ----- -----
2. 3. (생략)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<u>채납처분</u>을 하여야 한다.	2.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강제징수</u>를 -----.
제86조(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)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·연체금 또는 <u>채납처분비</u>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(過誤納付)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·연체금 또는 <u>채납처분비</u>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.	제86조(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) ① ----- -----<u>강제징수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강제징수비</u>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 제99조(과징금) ① ~ ④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99조(과징금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이 조에서 “조정등”이라 한다)
 에 대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
 이 청구 또는 제기한 「행정심
 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
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
 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
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, 판
 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
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
 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
 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
 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
 징수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
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, 판
 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
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
 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
 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
 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③ ~ ⑥ (생략)

제102조(정보의 유지 등) (생략)

제109조(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)

의약품

의약품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

의약품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생략)

제102조(비밀준수 의무 등) (현행과 같음)

제109조(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)

① ~ ④ (생략)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. 1. (생략) 2.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,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<u>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</u>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~ ⑪ (생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<u>요양</u> <u>급여</u>----- ----- ----- ----- ⑥ ~ ⑪ (현행과 같음)
--	--